

●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041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1월 22일

산업통상부장관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,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연장하는 한편,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맞추어 「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 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공업원료용 천연가스(LNG) 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
(안 제21조제8항, 제22조제5호, 제23조제12호 등)

나.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 연장 및 환급물량 산출 기준을 명시
(안 제21조제5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의2제6항~7항)

다.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명을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고, 기관변경에 따른 업무절차를 조정
(안 제9조의2제5~6항, 제17조제2항 및 제4항, 제18조제1항~2항 등)

라.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등 현행화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(참조 : 석유산업과 /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,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r.go.kr> → 예산·법령→ 입법·행정예고 → 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(의견제출)

- 공업원료용 천연가스 부과금 환급 및 환급기관 조정 : 044-203-5222, young165@korea.kr
- 전자상거래 부과금 환급 : 044-203-5226, lje0123@korea.kr